

[백수보험약관]

제 1 조 [보험의 내용] 우리회사(이하“회사”라합니다) 는 이 약관의 정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수익자 (이하“수익자”라합니다)에게 약정한 생활자금 또는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참조)을 드립니다.

1. 생활자금 지급일에 살아 있을 때.
2. 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3. 보험기간중 불의의 사고(별표 2 참조, 이하“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재해 또는 질병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
 - 가.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나.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다.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서 중신통록 항시 간호를 요할때. (상해

- 로 인한 때에 한함)
- 라. 흉복부 잠기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서 중신통록 항시 간호를 요할때. (상해로 인한 때에 한함)
- 마.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바. 두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사.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아.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제 2 조 [회사의 책임기간]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1회 보험료 기수증을 교부하고 제 1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후에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때부터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보험증권의 교부는 승낙의 통지로 봅니다. 또한 제 1항 단서의 경우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되면 회사가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본항에 규정한 15일 이내에도 회사는 계약(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상의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제 1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고 청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폐질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합니다.

제 3 조 [가입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위험측정상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소정양식의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질문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또는 계약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③ 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후 해지의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4 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그 계약의 납입방법과 지급방법에 따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과 지급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보험료 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에게 유예기간 만료 10일 이전에 계약의 실효를 예고하고 그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 6 조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 소정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 2조 및 제 3조의 규정은 부활의 경우에 준용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폐질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폐질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3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은 서면통지 또는 보험증권 배서의 방법에 의합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보험료의 납입기간.
 3. 보험금액의 감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장래의 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

- 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③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자금 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④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그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하는 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의 보험금액이 회사가 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0조[생활자금 또는 보험금의 청구] 수익자는, 제1조에 정한 생활자금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생활자금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소정의 생활자금 또는 보험금 청구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의 경우)
 3. 상해진단서(상해의 경우)
 4. 피보험자의 호적초본(생활자금 청구의 경우)
 5. 보험증권

6.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본인에 한함)
 7. 기타 수익자가 생활자금 또는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1조[생활자금 또는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10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3일 이내에 생활자금 또는 보험금을 드립니다.
- 다만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5일 이내에 생활자금 또는 보험금을 드립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지정한 지급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생활자금 또는 보험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③ 제1조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지급할 생활자금 또는 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
- 제12조[환급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제3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및 제4항) 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3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기

- 준으로 계산한 환급금(별표3 "환급금 예시표"참조)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1. 회사 소정의 환급금 청구서
 2.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본인에 한함)
 3. 보험증권
 4. 기타 계약자가 환급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의한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제11조 제2항의 요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제14조[대표자의 지정변경]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그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

- 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제15조[계약자에 대한 배당]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에 대하여 확정배당금과 매 사업년도말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배당 준비금을 적립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적립한 확정배당금은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하고 이익배당금은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하여 드립니다.
- 제16조[계약자 대부] 계약자는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7조[분쟁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 분쟁심의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8조[청구권의 시효] 생활자금, 보험금, 해약환급금, 기타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청구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제19조[계약자의 주소 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통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발송한 통지가 통상의 도달 소요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20조[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 드립니다.
- 제21조[연령의 계산 및 착오의 처리] 연령의 계산 및 착오의 처리는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피보험자가 생활자금 지급 사유 발생일까지 살아 있을 때 : 생활자금 지급 개시일부터 10년간 매년의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 금액의 10%를 생활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0회 지급)
 2.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 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시 : 기납입보험료 전액
 - 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생활자금 지

- 급 종료년도 이전 사망시 : 계약 보험금액 전액.
- 다. 생활자금 지급 종료년도 경과후 사망시 : 계약보
험금액의 50%
3.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재해 또는 질병
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 :
- 가. 생활자금 지급 종료년도 이전 사망시 : 계약 보
험금액의 2 배액
- 나. 생활자금 지급 종료년도 경과후 사망시 : 계약보
험금액의 50%

별표 2.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증
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
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 교통기관 사고

5. 수상 교통 기관 사고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기관 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
부염 등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세제유지 및 구리스 용제, 기타의 화학물질
에 의한 접촉피부염
② 살모넬라(Salmonella)성 식중독
③ 세균성 식중독(포도상 구균성 보츠리이누스
(Botulinus)성, 기타 원인 불명의 세균성 식중
독)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
나 대장염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 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과도의 고온
- ② 고압 및 저압
- ③ 여행 및 신체 동요에 의한 장애
- ④ 기아, 갈, 불량환경폭로 및 방치중의 기아,
갈.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과로 및 격동중의 과로
-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연하장애 또는 정신
신경장애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물 흡입 또는 연
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③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질병의 진단 목적
- ② 질병의 치료 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6.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합니다.

17. 전쟁 행위에 의한 상해

18.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한 질병

별표 3.

해약환급금예시표

피보험자 연령 : 45세
계약 보험금액 : 100만원 } 기준
보험료 납입방법 : 전기월납

경과기간	종류 구분	55세생활자금지급개시		60세생활자금지급개시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 월		5,590	0	3,690	0
6 개 월		33,540	0	22,140	0
1 년		67,080	13,460	44,280	0
3 년		201,240	127,610	132,840	53,340
5 년		335,400	262,230	221,400	120,600
10 년		670,800	776,370	442,800	368,040
15 년		670,800	583,980	664,200	812,600
20 년		670,800	173,170	664,200	633,400